보도자료 Press Release

배포일시	2019. 4. 1.(월) 16:00 (총 4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대전지방기상청 관측과	담 당 자	과 장 박 관 휴 담 당 박 민 규	전화번호	070-7850-4185	

‘세종 종관기상관측장비’ 오늘부터 1일!

– 기상청, 기상기후자료 제공을 위한 예비관측 시작

□ 대전지방기상청(청장 손승희)은 국민 안전과 품질 높은 기상기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종관기상관측장비(지점번호: 234)’를 새로 설치하여 오늘(1일) 0시부터 예비관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종관기상관측장비(ASOS: Automated Synoptic Observing System)는 기상관측소에서 목측요소를 제외한 기상요소에 대한 관측업무를 자동화한 것이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동안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종관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기존의 방재기상관측장비에 비해 다양한 기상기후자료가 생산·제공되는 종관기상관측장비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과 언론 보도가 빈번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에는 방재기상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한 방재기상관측장비 4대(세종고운, 세종금남, 세종연서, 세종전의)가 운영 중이다.

< 자동기상관측장비별 기상관측요소 종류 >

구 분	기상관측요소	비 고
종관기상관측장비	방재기상관측장비의 관측요소 + 초상·지면온도, 일조, 기압, 적설* 등	방재기상용 +기후자료 활용
방재기상관측장비	바람(풍향·풍속), 기온, 습도, 강수량, 강수유무 등	방재기상용

* 2019년 하반기 설치 추진중

□ 기상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3배수지 일원(새롬동 산 61)에 25m×25m크기의 부지를 제공받아 관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장비 운영상태 점검 등을 위해 1년간 예비관측을 거쳐, 2020년 4월1일(수)부터 정규관측을 시작하게 된다.

※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대전지방기상청 업무협약(2018년 3월)

□ 이곳에서 관측한 기상자료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실시간 기상관측자료로서, 여름철 집중호우 등 지역 방재업무에 활용될 뿐 만 아니라, 누적된 기상관측자료는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발전계획 등 정책 결정이나 여러 산업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 손승희 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을 통한 국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품질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세종(234) 종관기상관측 전경 사진
2. 대전지방기상청-세종특별자치시 상호 업무협약서('18.3.20.)

붙임 1 세종(234) 종관기상관측장비 전경 사진

붙임 2 대전지방기상청-세종특별자치시 상호 업무협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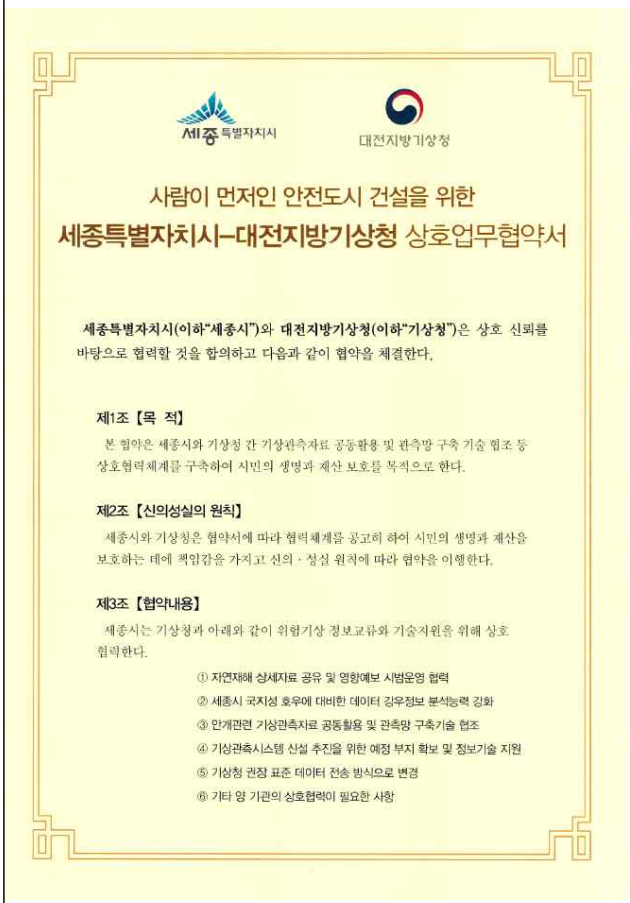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지방기상청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대전지방기상청 상호업무협약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세종시")와 **대전지방기상청(이하"기상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세종시와 기상청 간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및 관측망 구축 기술 협조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세종시와 기상청은 협약서에 따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의 · 성실 원칙에 따라 협약을 이행한다.

제3조【협약내용】
세종시는 기상청과 아래와 같이 위험기상 정보교류와 기술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① 자연재해 상세자료 공유 및 영향예보 시범운영 협력
② 세종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데이터 강우정보 분석능력 강화
③ 안개관련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및 관측망 구축기술 협조
④ 기상관측시스템 신설 추진을 위한 예정 부지 확보 및 정보기술 지원
⑤ 기상청 권장 표준 데이터 전송 방식으로 변경
⑥ 기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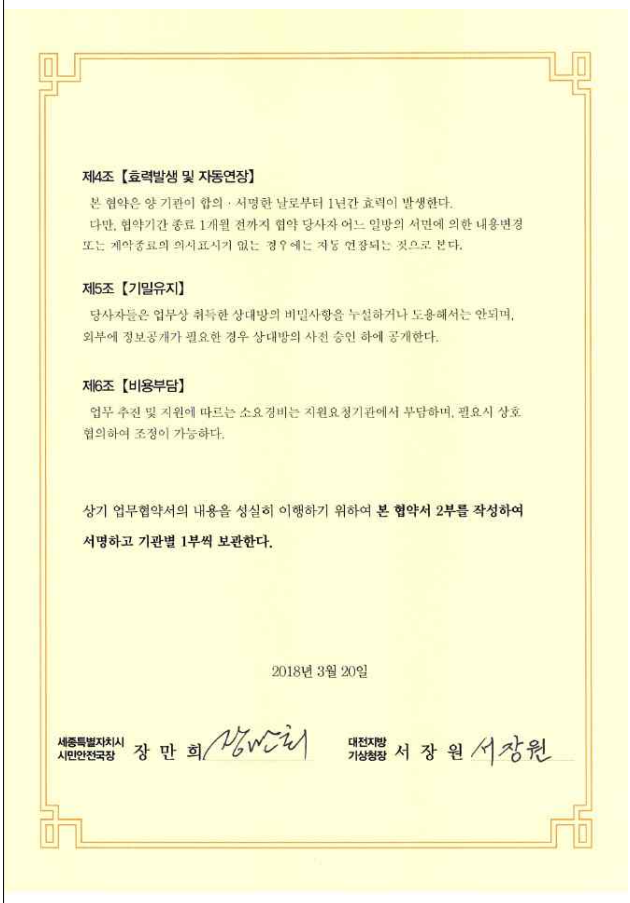

제4조【효력발생 및 자동연장】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합의 ·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 당사자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내용변경 또는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기밀유지】
당사자들은 업무상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되며, 외부에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사전 승인 하에 공개한다.

제6조【비용부담】
업무 추진 및 지원에 따르는 소요경비는 지원요청기관에서 부담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상기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기관별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국장 장 만 희 (서명)

대전지방기상청장 서 장 원 (서명)